

## ●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3-97호

「유해화학물질 실내 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」를 개정함에 있어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따라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12월 05일

화학물질안전원장

### 「유해화학물질 실내 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」 일부개정안 행정예고

#### 1. 개정이유

산업계의 의견수렴에 따른 환기설비 예외 적용방안 마련, 검지·경보 설비의 세부기술 명확화

#### 2. 주요내용

가. 공정특성을 반영한 환기설비 예외방안 및 검지·경보 설비 세부기술 명확화

나. 현행 제도를 반영하여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문구 조정

#### 3. 의견제출

「유해화학물질 실내 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」 개정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, 단체(협회)는 **2023년 12월 26일까지** 국민참여입법센터(<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>)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(참조: 화학안전제도개선TF)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 개정(안) 전문은 ‘화학물질안전원’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가.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이유)

개정(안)	수정(안)	수정사유

나. 성명(법인,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, 주소 및 전화번호)

다. 기타 필요사항(참고자료)

라. 보내실 곳: 화학물질안전원 화학안전제도개선 TF

○ 메일: [jjh8@korea.kr](mailto:jjh8@korea.kr)

○ 전화: 043-830-4383, FAX: 043-830-4398

※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(<http://nics.me.go.kr>)